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비확충이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표시인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상의 이자납부내역 또는 은행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더라도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인해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서일-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

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의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서이46017-11558(2002.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타인이나 관계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의 지급이자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해당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 등을 비치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